

## 특허청 유관기관 현황

한국발명진흥회 <http://www.kipa.org>

### (1) 설립 목적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며 국내 지식재산산업을 보호·육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설립

### (2) 주요 업무

- 발명인식 제고를 위한 발명진흥기반 조성사업
-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사업
- 특허기술제품 판로개척사업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관한 발명진흥사업

###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우)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19 층
- 문의 : ☎ 02) 3459-2800, FAX 02) 3459-2999

한국특허정보원 <http://www.kipi.or.kr>

### (1) 설립 목적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기술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정보화하고 보급함으로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 2011. 8. 3.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특허청 심사업무 지원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부문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설 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발족

### (2) 주요 업무

- 특허청 선행기술 및 상표조사
- 국제특허분류 IPC 부여 및 한국특허정보의 보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정보조사
- 국내·외 특허정보 수집, 처리, 가공
- 특허문서전자화센터, 데이터관리센터 및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 대민 특허정보조사 서비스
- 특허정보와 관련한 연구·기획

### (3) 특허정보검색 문의

- 주소 : 우) 121-816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404 (동교동 146-8)
- 문의 : ☎ 02) 6915-6000, FAX 02) 6915-6009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http://www.kiip.re.kr>

### (1) 설립 목적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해 주요선진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실효성 있는 제언을 하기 위해 설립

### (2) 주요 업무

- 국내 · 외 지식재산의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 지식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의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 정부 ·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 기업에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공동연구

###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우)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9 층
- 문의 : ☎ 02) 2189-2600, FAX 02) 2189-2694

## R&D 특허센터 <http://www.rndip.re.kr>

### (1) 설립 목적

국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관련 지식재산 연계 IP-R&D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IP-R&D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 (2) 주요 업무

- IP-R&D 관련 정책개발 및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지원, 지재권 중심의 국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첨단부품소재 IP-R&D 지원 등 IP-R&D 전략지원
- 국가 R&D 특허성과 종합관리, IP-R&D 관련 인력양성, 저변확충, DB 구축, 전자연구노트 등 IP-R&D 기반조성
- NPEs Network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유망특허기술 발굴 및 전략 특허화, 특허기술 이전 · 평가 · 금융 촉진 등 IP-R&D 활성화
- 특허전략전문가 파견
- 기타 법 규정 등에 의하여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특허청장의 승인을 거친 사업 등

###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6 층
- 문의 : ☎ 02) 3287-4245, FAX 02) 3287-4349

## 대한변리사회 <http://www.kpaa.or.kr>

### (1) 설립 목적

산업과 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한 산업재산권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변리사들의 품위향상 및 친목도모를 하고자 설립

### (2) 주요 업무

- 변리사의 위상제고와 현안 문제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 변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사업 및 홍보사업
- 국내·외 지식재산관련 제도개선 및 자료발간
- 국고보조금 사업의 신속·정확한 수행을 통한 공익봉사체계구축

###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우) 137-8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97-13
- 문의 : 02) 3486-3486, FAX 02) 3486-3511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http://www.kipra.or.kr>

### (1) 설립 목적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에 중심적인 역할 수행 및 업종별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지재권 보호사업 관련 정책 제안을 하고자 설립

### (2) 주요 업무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및 정보제공
- 국내 위조상품 단속활동 지원 등 지재권 보호
-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지원
-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지원

###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우)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문의 : ☎ 02) 2183-5800, FAX 02) 2183-5899

## 한국여성발명협회 <http://www.inventor.or.kr>

### (1) 설립 목적

여성들에게 발명 생활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여성 발명 인구의 저변 확대를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발명풍토를 조성하며, 지식기반 사회와 세계화에 부응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창의성 계발로 이끌어 냄으로써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을 도모하고자 설립

### (2) 주요 업무

- 여성 발명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반 구축
- 잠재력 있는 여성 발명가 발굴 · 육성
- 여성 발명의 사업화 지원과 여성 발명 장려사업

###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우)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 문의 : ☎ 02) 538-2710, 2702, 9983 FAX 02) 538-2714

## 한국지식재산협의회 <http://www.kinpa.or.kr>

### (1) 설립 목적

각 업종 및 분야의 대표기업들이 모여 지식재산분야의 전 영역에 걸친 상호 협력방안 논의 및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는 민간 자율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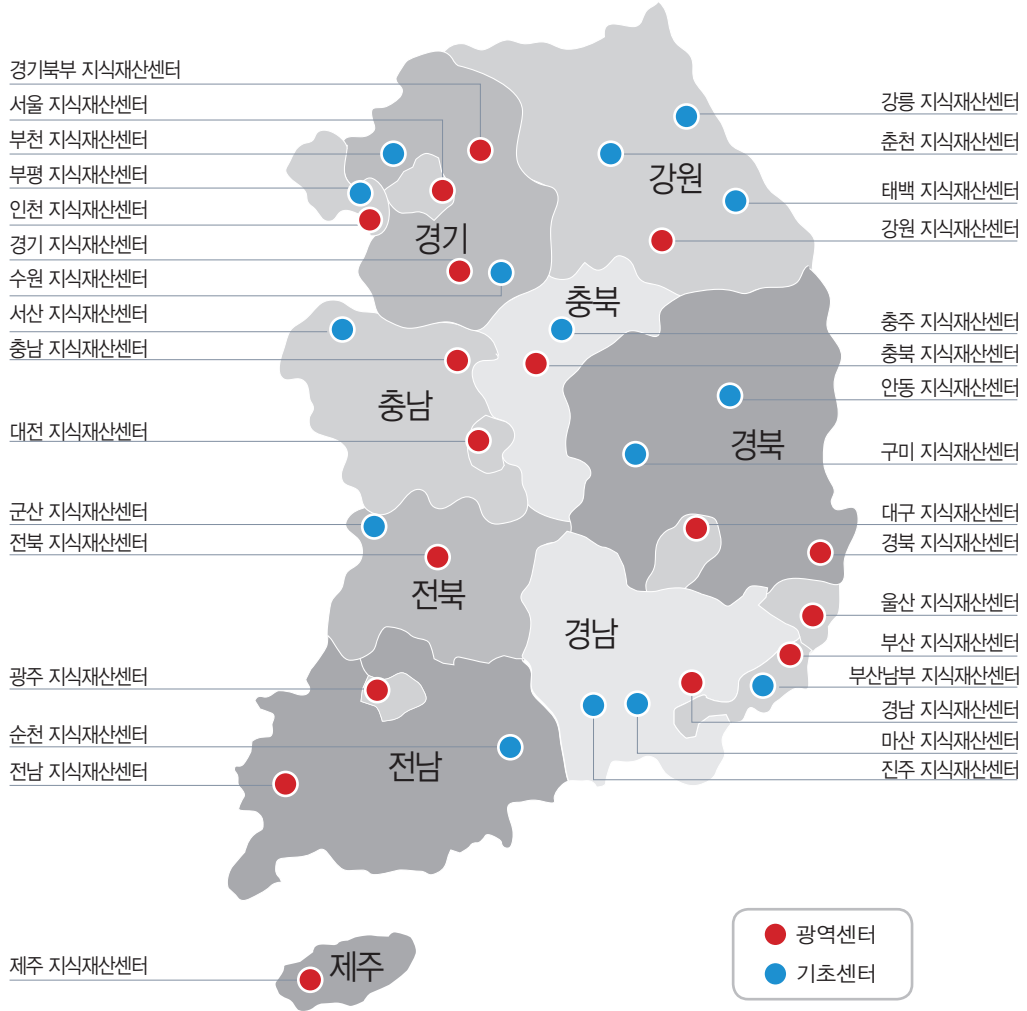
### (2) 주요 업무

- 특허청 등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조언
- 지식재산 경영, 특허분쟁, 특허정보분석 등에 관한 공동조사 및 연구
- 국제적인 지식재산 이슈에 조기대응
- 지식재산 인력양성과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이면서도 중·장기적인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활동
- 회원 간 정보공유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 (3) 주소 및 문의

- 주소 : 우)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 문의 : ☎ 02) 3459-2804

##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운영기관	발명진흥회 지회	지역상공 회의소	테크노파크 산업통상진흥원	인천광역시 (부평도서관)	산업경제진흥원 · 산업진흥재단	합계
개소	4	21	4	1	1	32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합계
개소	1	2	2	1	1	1	1	4	4	2	2	3	3	2	2	1	32

구분	광역센터(컨설팅 사업수행 센터)	기초센터	합계
개소	17	15	32

연번	센터명	운영기관	연락처	등록 (설치)일	주소
1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051)645-9684	2000. 2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
2	대구지식재산센터	대구상공회의소	053)242-8081	2000. 2	대구시 동구 신천3동 107
3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상공회의소	032)810-2838	2000. 2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7
4	광주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062)954-3841	2000. 2	광주 광산구 도천동 621-15
5	울산지식재산센터	울산상공회의소	052)228-3083	2000. 2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589-1
6	수원지식재산센터	수원상공회의소	031)244-3453	2000. 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 2동 80-17
7	춘천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강원지회	033)258-6580	2000. 2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198-25
8	충북지식재산센터	청주상공회의소	043)254-4281	2000. 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 2가 116-84
9	충남지식재산센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041)556-7131	2000. 2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번지
10	구미지식재산센터	구미상공회의소	054)454-6601	2000. 2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4
11	포항지식재산센터	포항상공회의소	054)274-2233	2000. 2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10-2
12	마산지식재산센터	마산상공회의소	055)241-4121	2000. 2	경남 마산시 산호동 17-5
13	전북지식재산센터	전주상공회의소	063)288-3013	2000. 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14	순천지식재산센터	순천·광양상공회의소	061)741-5511	2000. 2	전남 순천시 장천동 58-2
15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064)757-2164	2000. 2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4B 1L
16	경남지식재산센터	창원상공회의소	055)283-0608	2001. 7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97-6
17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원도중소기업 지원센터	033)749-3310	2001. 7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405-29
18	진주지식재산센터	진주상공회의소	055)753-0411	2001. 12	경남 진주시 상대동 341-3
19	부평지식재산센터	인천광역시 부평도서관	032)512-8023	2003. 1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186-454
20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테크노파크	051)974-9066	2003. 3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 1276번지 부산TP POST-BI 306호
21	경기지식재산센터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030	2003. 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71-11
22	대전지식재산센터	대전테크노파크	042)867-4002	2003. 10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14
23	강릉지식재산센터	강릉상공회의소	033)643-4411	2003. 10	강원도 강릉시 교2동 349-2
24	충주지식재산센터	충주상공회의소	043)843-7002	2005. 7	충북 충주시 문화동 562번지
25	부천시지식재산센터	부천산업진흥재단	032)621-2082	2005. 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8
26	전남지식재산센터	목포상공회의소	061)242-8581	2005. 7	전남 목포시 중동 2가 1번지
27	안동지식재산센터	안동상공회의소	054)859-3090	2005. 11	경북 안동시 운흥동 300-6
28	서산지식재산센터	충남서부상공회의소	041)663-3063	2005. 11	충남 서산시 읍내동 114-1
29	태백지식재산센터	태백상공회의소	033)552-5555	2005. 11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64-6
30	서울지식재산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02)380-3640	2009. 3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E3-2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1층
31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031)853-7433	2010. 2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32	군산지식재산센터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063)471-1284	2011. 3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15-1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2층

## 권리별 법정 기간

### (1) 출원심사 청구기간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특§59②)</li> <li>▶ 원출원일로부터 5년경과 후 분할/변경/이중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특§59③)</li> </ul>
실용 신안	<p>〈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실§12②)</li> <li>▶ 원출원일로부터 3년경과 후 분할/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실§12③)</li> </ul>

### (2) 보정기간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6. 30. 이전 특허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허출원일, 우선권 주장의 최선일로부터 1년 3월 이내(구 특§47①)</li> <li>2) 상기 1)의 해당일로부터 1년3월을 경과한 후 특허결정등본의 송달전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간(구 특§47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출원심사의 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li> <li>② 제3자로부터 출원심사청구가 있다는 통지받은날부터 3월 이내에 보정하는 경우</li> <li>③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지정기간)</li> <li>④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는 경우</li> </ul> </li> </ul> </li> </ul>
특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 7. 1. 이후 2009. 6. 30. 이전 특허출원〉 <p>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특§4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지정기간)</li> <li>②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li> </ul> </li> <li>▶ 〈2009. 7. 1. 이후 특허출원〉 <p>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특§4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특허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제출기간(지정기간)</li> <li>②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li> </ul> </li> </ul>
실용 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2월 이내(구 실§13① · 구 실칙§9)</li> <li>② 구 법 제12조(기초적요건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지정기간내</li> </ul> </li> <li>▶ 〈2006. 10. 1. 이후 2009. 6.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 <p>실용신안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의 기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실§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실용신안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지정기간)</li> <li>②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li> </ul> </li> <li>▶ 〈2009. 7. 1. 이후 실용신안출원〉 <p>특허법 준용</p> </li> </ul>

디자인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결정 또는 제26조 규정에 따른 거절결정에 해당하는 결정통지서 송달전까지 가능.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때에 보정 가능(디§18⑤)
상표	<p>▶ <b>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상§14)</b></p> <p>① 상표결정서의 송달전에는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가능                  ②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상§70조의2)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내(상§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23② · 상§46의4② · 상§48②)</p>
	<p>▶ <b>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상§15)</b></p> <p>① 거절이유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지정기간)(상§23 · 상§48②)                  ②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내(지정기간)(상§27①)                  ③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상§70의2)</p>

### (3) 분할출원 가능기간

특허	<p>▶ <u>〈2001. 6. 30. 이전 특허출원〉</u></p> <p>▶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 기간과 동일</p> <p>▶ <u>〈2001. 7. 1. 이후 2009. 6. 30. 이전 특허출원〉</u></p> <p>▶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 기간과 동일</p> <p>▶ <u>〈2009. 7. 1. 이후 특허출원〉</u></p> <p>① 특허법 제47조에서 정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특§52)                  ②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제132조의3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p>
실용 신안	<p>▶ <u>〈1999. 7. 1. 이후 2006. 9. 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u></p> <p>① 구법 제12조(기초적 요건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지정기간내                  ② 구법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정 가능기간(출원일부터 2월)내(구 실§16)</p> <p>▶ <u>〈2006. 10. 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u></p> <p>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서 정한 분할출원 가능 기간내</p>
디자인	▶ 디자인보호법 제18조 제5항에서 정한 보정기간내(디§19③)
상표	▶ 상표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보정기간내(상§18①)



#### (4) 변경출원 가능기간

특 / 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선출원이 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특§53)
	▶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선출원이 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특허출원일부터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 30일의 기간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실§10)
디자인	<2005. 6. 30. 이전 출원에 적용> ▶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구 디§20의2③)
상표	▶ 최초출원의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상§19④)

#### (5) 이중출원 가능기간 | 원출원이 1999. 7. 1. ~ 2006. 9. 30. 출원에 적용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로 이중출원 할 수 있는 기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후 1년 이내(구 특§53)
▶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이중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① 특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② 특허출원에 대한 최초의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단,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본다.

#### (6)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 소급인정 기간

▶ 무권리자가 등록받지 못하게 된 날(확정된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특§34)(실§11)(디§14)
▶ 무권리자의 특허의 등록공고일부터 2년 이내 또는 무권리자에 대하여 특허되었음을 이유로 취소결정·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특§35)(실§11)
▶ 무권리자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취소결정·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결정·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한 경우(디§15)

#### (7) 출원공개 시점

특/실	▶ 특허출원일, 우선권 주장의 최선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다만, 이 기간 전이라도 출원인이 신청한 때(특§64)(실§15)
디자인	▶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 송달 전 출원인이 공개신청 한 때(디§23의2)

## (8) 조기공개신청 취하가능기간

- ▶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특칙§ 44③)(실칙§ 17①)(디칙§ 6의2②)

## (9)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관련기간

특 / 실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기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특§ 54②)(실§ 11)
	▶ 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우선권 주장 최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특§ 54④)(실§ 11)
디 / 상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기간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디§ 23②)(상§ 20②)
	▶ 조약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디§ 23④)(상§ 20④)

## (10) 국내우선권주장 관련 기간 | 상표·디자인은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 없음

### ▶ 국내우선권주장 기간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특§ 55①)(실§ 11)

### ▶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취하간주 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특§ 56①)(실§ 11)

※ 선출원이 2001. 7. 1. ~ 2006. 9. 30. 이전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인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한 때(구 특§ 56①)(구 실§ 19①)

### ▶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우선권주장 취하가능 시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이내(특§ 56②)(실§ 11)

## (11) 공지에외주장 신규성상실예외, 출원시특례 관련 기간

### [특/실/디] ▶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출원으로 보는 경우의 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출원된 때(특§ 30①)(실§ 5①)(디§ 8①)

- 1)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권리를 가진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언히 실시된 경우,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 [상표] ▶ 박람회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가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상§ 21①)

-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 3)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날
- 4) 조약 당사국 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날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 ▶ 증명서류의 제출기간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특§ 30②)(실§ 5②)(디§ 8②)(상§ 21②)

## (12) 신규 설정 등록료 납부기간

특 / 실 / 디	▶ 정상납부기간(실용신안은 2006. 10. 1. 이후 출원에 적용)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특§79)(실§16)
	▶ <u>추가납부기간</u> 정상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기간경과 후 6월 이내에 추가납부 가능 함. (특허(등록)료의 1개월이내 20%, 2~3개월이내 30%, 4~6개월50%의 가산료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특§81)(실§20) )
상표	▶ <u>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월 이내</u> ※ 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신청한 경우 1 회 30 일 연장

## (13) 이의신청과 관련된 기간 | 특허·실용신안의 이의신청은 무효심판으로 통합

| 특허는 2001. 7. 1. 이후 출원 ~ 2007. 6. 30. 이전 설정등록된 건 적용

▶ <u>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u> [특 / 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구 특§69①)(디§29의2) [상 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이내(상§25)
▶ <u>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u> [특 / 상]: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구 특§70)(상§26) [디자인]: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디§29③)

## (14) 존속기간

[특허] ▶ 특허권 설정등록 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특§88)
[실용신안] ▶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후 실용신안출원일로부터 10년(실§22)
[디자인] ▶ 디자인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디§40)
[상표] ▶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상§42), 갱신출원으로 10년씩 연장 가능

## (15)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기간

▶ <1987. 7. 1. ~ 1990. 8. 31. 이전 특허 출원> - 연장신청제도 특허권존속기간 만료일 3년 전부터 존속기간만료일까지
▶ <1990. 9. 1. 이후 특허 출원> - 연장출원제도 특§89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전 6월 이후에는 할 수 없다.(특§90②)

## (16) 절차의 무효처분 취소 청구기간

- ▶ 보정명령을 받은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지정기간을 지키지 못한것으로 인정된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지정된 기간(보정기간 또는 특허료 등의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 16②)(실§ 3)(디§ 4의15)(상§ 5)

## (17)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 ▶ **최초의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 경과 후(특§ 219③)(실§ 44)(디§ 77의4)(상§ 92)
- ▶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 : 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날(특§ 219③)(실§ 44)(디§ 81)(상§ 92)

## (18) 특허료 보전기간

- ▶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특§ 81의2)(실§ 20)(디§ 33의2)(상§ 36의2)

## (19) 불복심판 청구기간

- ▶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특§ 132의3)(실§ 33)(디§ 67)(상§ 70의2)  
※ 디자인, 상표의 경우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 디 67 의 2 )( 상 70 의 3 )

## (20) 비밀디자인 청구가능기간

- ▶ 디자인등록 출원일로부터 설정등록료 납부일 까지(디§ 13②)

## (21)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기간

- ▶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전 1년 이내,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상§ 43)

## (22) 상표권의 소멸

- ▶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상속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상§ 64)
- ▶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종결 등기일 다음날에 소멸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상§ 64)
- ▶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소멸  
상품분류전환등록시 기재되지 않은 지정상품은 분류전환등록일에 소멸, 분류전환등록이 존속기간 만료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소멸(상§ 64의2)

## 출원 · 등록 · 심사 및 심판 주요통계

### (1) 출원

#### ■ 우리나라 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8	2009	2010	'11.6.
특 허	170,632	163,523	170,101	80,388 (3.8)
실용신안	17,405	17,144	13,661	6,001 (△13.9)
디 자 인	56,750	57,903	57,187	27,163 (△5.8)
상 표	99,986	103,433	108,324	58,541 (7.0)
계	344,773	342,003	349,273	172,093 (2.3)

\* '11년 통계는 접수기준,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상표갱신 제도변경('10.7, 출원 → 신청)에 따라 기존 갱신등록출원건 일괄 제외

- 갱신등록출원건 ('08) 27,924 건, ('09) 22,987 건, ('10) 30,810 건 (갱신출원 12,831, 신청 17,979 건)

#### ■ 2009년 국가별 출원 현황

(단위 : 건)

출원국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일 본	14,168	23	1,205	4,397	19,793
미 국	10,728	23	957	6,510	18,218
독 일	3,002	7	123	1,095	4,227
중 국	426	56	43	520	1,045
기 타	7,883	234	641	5,728	14,486
계	36,207	343	2,969	18,250	57,769

\* 외국인 출원건 중 국가별 분류 (외국 → KIPO)

#### ■ 연구주체별 특허 출원건수 및 점유율

(단위 : 건, %)

구 분	2008	2009	2010	'11.6.	
대 기업	46,951 (27.5)	39,021 (23.9)	45,658 (26.8)	17,524 (21.8)	
중소기업	23,292 (13.7)	21,964 (13.4)	32,558 (19.1)	13,318 (16.6)	
대 학교	8,296 (4.9)	9,549 (5.8)	10,667 (6.3)	5,699 (7.1)	
공공연구기관	7,207 (4.2)	8,585 (5.3)	9,492 (5.6)	3,257 (4.1)	
외국	개인	1,063 (0.6)	910 (0.6)	969 (0.6)	519 (0.6)
	법인	42,455 (24.9)	35,297 (21.6)	37,327 (21.9)	19,397 (24.1)
정부·지자체	559 (0.3)	694 (0.4)	708 (0.4)	243 (0.3)	
개 인	32,380 (19.0)	34,685 (21.2)	32,298 (19.0)	17,132 (21.3)	
기타내국법인*	8,429 (4.9)	12,818 (7.8)	424 (0.3)	3,299 (4.1)	
계	170,632	163,523	170,101	80,388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의한 중소기업 (이하 별도 설명이 없는 경우 동일), ( )는 점유율

\*\* 기타내국법인은 미정비대상으로 내국법인코드를 가지고 있는 건 중 중소기업, 대학교 등이 해당함

■ 우리나라 PCT 국제출원 현황

(한국특허청 접수기준, 단위: 건, %)

구 분	수 리 관 청				지 정 관 청		
	영어	일어	국어	계	특 허	실 용	계
2008	2,928	3	4,982	7,913 (12.0)	30,032	17	30,049 (3.5)
2009	2,226	-	5,800	8,026 (1.4)	25,662	23	25,685 (△14.5)
2010	2,303	-	7,336	9,639 (20.1)	27,816	26	27,842 (8.4)
'11.6.	929	-	3,893	4,822 (13.2)	13,644	12	13,656 (0.7)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주요국 PCT 국제출원 현황

(WIPO 접수기준, 단위: 건, %)

출원국	연도별 출원 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미 국	51,280	54,043	51,638	45,617	44,890 (△1.6)
일 본	27,025	27,743	28,760	29,802	32,180 (8.0)
독 일	16,736	17,821	18,855	16,797	17,558 (4.5)
중 국	3,942	5,455	6,120	7,900	12,295 (55.6)
한 국	5,945	7,064	7,899	8,035	9,668 (20.3)
프 랑 스	6,256	6,560	7,072	7,237	7,288 (0.7)
계	111,184	118,686	120,344	115,388	123,879 (7.4)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 WIPO PCT Yearly Review ('11.5.9 발표)

(2) 등 록

■ 권리별 등록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8	2009	2010	'11.6.
특 허	83,523 (△32.5)	56,733 (△32.1)	68,843 (△21.3)	40,085 (27.3)
실용신안	4,975 (78.0)	3,949 (△20.6)	4,301 (△8.9)	2,630 (27.4)
디 자 인	39,858 (△2.2)	32,091 (△19.5)	33,697 (△5.0)	19,751 (24.3)
상 표	65,583 (8.7)	53,155 (△19.0)	53,136 (0)	32,016 (29.3)
계	193,939 (△14.8)	145,928 (△24.8)	159,977 (△9.6)	94,482 (27.3)

\* (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3) 심 사

#### ■ 특허 심사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1.6.	연도별 심사청구건수합계
출원건수* 심사청구연도	160,921	166,189	172,469	170,632	163,523	170,101	80,388	
2005	94,047							118,304
2006	2,930	99,083						127,563
2007	2,512	3,628	106,649					137,446
2008	9,293	3,142	4,245	106,903				143,916
2009	5,438	7,595	1,966	2,788	104,504			132,773
2010	13,218	6,871	9,317	2,573	3,709	107,383		143,071
'11.6.	-	7,053	5,118	3,207	1,633	2,180	50,950	70,141
출원연도별 심사청구건수합계 (심사청구율)	127,438 (79.2)	127,372 (76.6)	127,295 (73.8)	115,471 (67.7)	109,846 (67.2)	109,563 (64.4)	50,950 (63.4)	-

\* ('05 ~ '10) 수리기준, ('11.6.) 접수기준

#### ■ 주요국 심사처리기간

(단위 : 개월)

구 분	한 국('10)	미 국('10)	일 본('10)
특 · 실	18.5	25.7	28.7
디 자 인	10.0	-	6.5
상 표	10.6	2.7	5.3

#### ☞ 우리나라 심사처리기간 추이

(단위 : 개월)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11.6.
특 · 실	9.8	9.8	12.1	15.4	18.5	17.4
디 자 인	5.9	5.5	5.6	9.0	10.0	9.2
상 표	5.9	5.7	6.5	9.7	10.6	11.1

\* (~'09년) 12월 기준 심사처리기간, ('10년~) 연평균 심사처리기간, ('11년) 상반기 평균 심사처리기간

\* 상표 처리기간은 갱신출원을 제외한 신규출원의 처리기간

#### (4) 심 판

##### ■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계	
2009	결 정 계	9,533	513	243	2,969	13,258
	당사자계	1,028	315	434	2,089	3,866
	계	10,561	828	677	5,058	17,124
2010	결 정 계	8,200	307	219	2,573	11,299
	당사자계	1,070	252	472	2,095	3,889
	계	9,270	559	691	4,668	15,188
'11.6.	결 정 계	3,424	113	57	1,287	4,881
	당사자계	512	109	129	1,153	1,903
	계 (전년 대비)	3,936 (△15.0)	222 (△26.7)	186 (△41.9)	2,440 (5.9)	6,784 (△10.3)

##### ■ 주요국 심판처리기간

(단위 : 개월)

구 분	한 국			미 국 (2010)	일 본 (2010)
	2009	2010*	'11.6.		
특허·실용신안 (결정계/당사자계)	8.0 (8.2 / 7.6)	10.6 (11.0 / 9.0)	10.3 (10.8 / 8.6)	(11.0 / 12.0)	(24.0 / 7.0)
디자인·상표 (결정계/당사자계)	8.0 (9.1 / 6.9)	9.1 (10.5 / 7.8)	8.7 (9.7 / 7.8)	-	디 (6.0 / 7.0) 상 (11.0 / 6.0)
계 (결정계/당사자계)	8.0 (8.5 / 7.2)	9.9 (10.9 / 8.3)	9.6 (10.4 / 8.1)	-	-

\* (~'09년) 12월 기준 심판처리기간, ('10년~) 연평균 심판처리기간

※ 산업재산권 통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 정보마당 → 통계 / 동향 / 분석 → 지식재산권통계



## 문의전화 안내 일람표

분야	부서명	전화번호	관련 페이지
종합상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123
특허고객 서비스 업무 (서류접수 등)	특허청 고객지원실	042) 481-5200, 5226	122
	서울사무소	02) 568-8155	122
출원	특허청 출원과	042) 481-5414	58
PCT·마드리드 국제출원 (수수료 포함)	특허청 국제출원과	042) 481-5208, 5279	58, 107, 109
등록	특허청 등록과	042) 481-5247	87
심판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 481-5918	96
수수료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 481-5255	114
교육	국제지식재산연수원	042) 601-4458-9, 4339, 4309	
창출·활용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 3459-2943	136
		02) 3459-2938	140
		02) 3459-2934	142, 143
창출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042) 481-8269	128
		042) 481-8544	129
		042) 481-8660, 8663	130
		042) 481-8611	131
	한국발명진흥회 산업인력양성팀	02) 3459-2835, 2833	132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02) 3459-2824, 2825	128, 130
		042) 3459-2861	129, 131
	R&D특허센터 IP 성과활용팀	02) 3287-4341	133
		02) 3287-4353	134
	R&D특허센터 IP 전략사업팀	02) 3287-4219, 4221	126
		02) 3287-4318, 4331	127
02) 3287-4319		135	

분야	부서명	전화번호	관련 페이지
정책 활용 지원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 481-5322	141
		042) 481-5887	144
	한국발명진흥회	02) 3459-2892	138, 139
		02) 3459-2796	144
	한국벤처투자(주) 투자2팀	02) 2156-2020	141
보호 및 분쟁해결지원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042) 481-5961	147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 553-5861	146, 147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02) 2183-5880~1	148
		02) 2183-5819	150
	수출기업 지재산 분쟁 상담센터	02) 2183-5801	14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02) 3460-7353, 7359	150